

문서번호	BSKS-2-1-06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4

1986.03.01.제정 1997.01.10.개정 2000.03.01.개정 2003.01.01.개정 2008.03.01.개정 2012.03.01.개정 2014.0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산학처

- 제1조(목적) 본 장은 학칙에 의거하여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, 학생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학생중)** 입학절차를 마친 신입생, 복학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본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학생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항상 모바일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7.16.>
  - 2. 학생은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모바일학생증을 제시하여
  - 야 한다.<개정 2019.07.16.>
  - 3. < 삭제 2019.07.16.>
- 제3조(학생중 사용제한)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학생신분을 표하기 위한 것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4조(권리정지)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도서관 등 학교시설물에 출입을 할 수 없다.
- **제5조(학생중 분실 및 재발급)** 학생증의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증재 발급신청서(산학처 소정용지)를 작성하여 산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03.01., 2020.07.03., 2020.09.25.>
- **제6조(집회 및 결사 신청)** 교내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그 5일전까지 집회 및 결사 신청서(산학처 소정용지)를 작성하여 산학처를 경유,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03.01., 2020.07.03., 2020.09.25>
- 제7조(학생활동의 금지) 학생활동의 행위가 본교의 기능을 해하고, 교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6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4

- 제8조(인쇄물의 제조 및 배포)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·부정기 간행물을 제조 및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 1부를 인쇄물 제조 및 배포신고서(산학처 소정용지)에 첨부, 산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03.01., 2020.07.03., 2020.09.25>
- 제9조(방송 허가) 교내에서 학생이 광고 등의 방송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방송내용을 작성, 산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>
- 제10조(광고·게시 허가) 교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·게시 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며, 광고·게시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한다.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- 제11조(교외자의 광고) 본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외자의 광고, 게시, 인쇄물 배포는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2조(게시물의 규격) 학내 모든 게시물의 용지 규격은 소정규격(4절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산학취업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08.03.01., 2020.07.03., 2020.09.25>
- **제13조(행사참여)** 본교 학생은 대학 또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행사제한) 각종시험(중간고사, 기말고사) 개시 일주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학내외에서 의 모든 행사를 금지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.
- **제15조(대외행사)** 학생이나 단체가 대외 각종행사에 참여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장의 의견서를 첨부, 산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 정 2008.03.01., 2020.07.03., 2020.09.25>
- **제16조(연합행사)** 학내외 연합행사는 행사 개시 1주일 전까지 행사신고서(산학처 소정용지)를 작성, 산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03.01., 2020.07.03., 2020.09.25>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문서번호	BSKS-2-1-06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4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(학사에 관한 내규의 사항을 규정으로 개편하여 시행함)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06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4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